



고용노동부

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

수신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 사업장 귀하
(경유)

제목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통합 산재조사 실시 요청

1. 귀 사업장의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2.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**제조업 및 철도운송업, 도시철도운송업, 전기업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**에 대해서는 "원·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"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
3. 이에, 대상 사업장에서는 [붙임1,2]를 참조하여 [붙임3]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(엑셀파일)형태로 아래 제출방법을 통해 **2026.4.30.(목)까지 제출(※기한엄수)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제출방법>

고용노동부 노동포털(labor.moel.go.kr) → 민원신청 → 산업안전 분야 민원신청
→ 검색란에 “원하청” 입력 →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우측
신청 클릭 → 로그인 후 파일 업로드

4. 아울러,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사업장 업무 안내서 1부.
2.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제출 방법 1부.
3.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(엑셀서식). 끝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



근로감독관 최영훈 과장 전결 2026. 3. 11.
박세호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감독과-813 (2026. 3. 11.) 접수

우 377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22번길 8 (대잠동 950) 1층 산재예방감독과 / http://www.moel.go.kr/pohang

전화번호 054-271-6846 팩스번호 0503-8803-0536 / cyh1st@korea.kr / 비공개(5,6)